KOSHA GUIDE

C - 59 - 2022

- (나) 트롤리를 지붕마루의 구조물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다) 트롤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트롤리 접근 및 이동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트롤리 이음부는 트롤리 이동 시 장애 없이 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소한 정열오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마) 트롤리 시스템 끝부분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난간 및 지붕보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승강시설

- (1) 지붕위로 이동하는 승강시설은 구조적 적합성, 설치방법 및 높이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다리를 승강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등의 구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에는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고소작업대를 승하강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설치 등의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이동 경로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상태에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낙하물 방지

(1) 소규모 자재 운반기기를 지붕 단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를 위한 수직보호망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반기기의 탈락,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반기기를 설치하는 구조체 또는 가시설은 안전계수 3 이상, 인양용 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